

제 호

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사업장 소재지:
4.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:
5. 기술인력 및 시설·장비 현황

기술인력	
시설	
장비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
위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

<변경 사항>

연월일	내용	확인 (서명 또는 인)

<처분 사항>

연월일	내용	확인 (서명 또는 인)

<참고 사항>

연월일	내용	확인 (서명 또는 인)